

## [    ] 1종 [    ] 2종 나무병원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5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법인	명칭	대표자		
	등기번호	설립일		
	소재지	전화번호	자본금	

기술인력	나무의사	성명	자격번호	성명	자격번호
기술인력	수목치료기술자	성명	자격번호	성명	자격번호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  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</li> <li>2.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가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나.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</li> <li>다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(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ul> </li> <li>4.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 <p>※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(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</li> <li>나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</li> <li>다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</li> </ul>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</li> </ol>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유의사항

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4조제4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4조의2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# 처리절차

